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대상 스톱킹범죄 가중처벌 및 결과적 가중범 신설〉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7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배숙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8. 13.
3. 회 부 일 : 2024. 0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며,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이 마련되기 시작함. 그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의 특별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인에 대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우리나라도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시행되었고, 이후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

성이 대두됨.

특히 성착취 목적 그루밍이나 강간 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일 경우 성인 대상 범죄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법정형이 적용됨.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하고자 함.

또한 단순 스토킹범죄를 넘어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들과 결과적 가중법 규정의 확충을 위해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등을 가중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3년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②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② <u>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u>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u><신설></u>	-----.
<u><신설></u>	1. <u>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u>
	2. <u>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사람</u> <u>제18조의2(스토킹범죄의 치사상)</u> <u>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사람을</u> <u>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u> <u>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u> <u>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u> <u>징역에 처한다.</u>

2. 검토의견

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 현행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흉기 등 휴대·이용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성인 대상인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할지 여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행 「형법」 및 「형사특별법」 중 동일 범죄에 대하여 성인이 대상인 경우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입법례¹⁾는 주로 성범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1) 「형법」 제287조에 따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및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이 있음

- 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아 일반적인 보호 필요성에 더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및 미성년자의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21세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중처벌(독일)하거나 가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에서 제외(미국)하는 등의 방법으로 또래 청소년들간의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를 들어 온라인 스토킹범죄의 경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적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자의 나이 등을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법률에서는 세부적인 나이 규정은 두지 않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의견²⁾도 있음.
- 한편, 개정안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 객체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미만” 등과 같이 피해자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독일은 16세 미만, 미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중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사례〉

구 분	가해자	피해자	관련법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추행	-	미성년자	「형법」 제302조 ³⁾
미성년자 간음·추행	-	13세 미만	「형법」 제305조 ⁴⁾
	19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⁵⁾

2)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5. p.388

구 분		가해자	피해자	관련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19세 이상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⁶⁾
	공박한 상태 이용 간음·추행	19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	19세 미만	
	성적 행위 유인·권유	19세 이상	16세 미만	
	강간, 강제추행 등 그 밖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9세 미만	

- 3)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임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5)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 국회입법조사처⁷⁾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규정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⁹⁾하고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행 가중처벌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¹⁰⁾하여 적절한 가중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7) 박소현, 「이슈와 논점: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2024. 6. 28.

8) 독일: 일반적인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독일 「형법」 제238조제2항제7호)

미국: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스토킹 범죄에 정해진 최대 형기보다 5년 더 가중됨. 다만, 가해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중한 결과 발생한 경우 제외)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스토킹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미국연방법률 제18장제2261B조).

9) 독일 16세 미만, 미국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스토킹행위자의 연령 하한을 구체화하여 또래들간의 스토킹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미성년자 스토킹행위의 경우 흉기휴대의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을 설정할 것인지 혹은 흉기휴대 미성년자 스토킹행위와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 이루어진 미성년자 스토킹행위를 구별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규정 신설

- 현행법은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흥기 등 휴대·이용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처벌 공백 최소화 가능성, 스토킹행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있는 기본범죄에 의하여 고의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¹¹⁾로서,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 “중한결과의 발생”,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등이 있어야 함.
- 특히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인과관계 이외에도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직접성”을 필요로 함.¹²⁾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2. 2. p. 219

- 즉, 중한 결과가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도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는 개별적인 구성요건의 해석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바, 감금치사죄와 강간치사죄와 같이 도망행위가 기본범죄행위 또는 그 실행행위로 인한 때에는 직접성이 인정¹³⁾되어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¹⁴⁾하게 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이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피하려다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스토킹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결과적 가중범이 신설되는 경우 해당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게 되므로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피해자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스토킹치사죄, 스토킹치상죄의 도입을 논의할 실익이 있다는 의견¹⁵⁾이 있음.

1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2. 2. p. 224

1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2. 2. p. 224

14) 대법원은 강간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탈출하려다가 추락사한 경우 강간치사죄를 인정하고(대법원 1995. 5. 12. 95도 42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질주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나오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 감금치사죄의 성립을 인정(대법원 2000. 2. 11. 99도 5286)하고 있음.

○ 다만, 현행 결과적 가중범 규정 사례에서의 기본범죄 행위와 스토킹 행위와의 특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행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 규정 사례를 살펴보면 상해치사죄(제259조¹⁶⁾), 폭행치사상죄(제262조¹⁷⁾), 유기치사상죄(제275조¹⁸⁾), 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¹⁹⁾), 강간치사상죄(제301조²⁰) 및 제301조의2²¹⁾) 등과 같이 대체로 기본범죄의 행위 자체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진 범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스토킹행위²²⁾는 “접근하거나

15)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2. p.387

16)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7)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18)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1)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①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건강에 해를 입힌 경우 ② 스토킹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 위험이나 중상해 위험에 빠뜨린 경우 ③ 스토킹행위자가 행위를 통해 피해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²³⁾을 두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한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3) 독일 「형법」

제238조(스토킹)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무단으로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로 인하여 생활을 적지 않게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 8. (생략)

(2)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고 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위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입힌 경우

경우 스토킹치사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법리상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²⁴⁾이 있음.

- 참고로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시도를 한 경우 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²⁵⁾.

문 의 처

02)6788-5070

2. 행위자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다른 사람을 사망 위험이나 중상해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 6. (생략)
7. 행위자가 21세 이상, 피해자는 16세 미만인 경우
(3) 행위자가 행위를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24)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2 p.387
다만, 대법원은 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와 관련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써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 25) 윤정숙,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12. p. 338

§ 107a StGB (Beharrliche Verfolgung)146)

- (1) 다른 사람을 위법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720일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자란 그 사람의 생활영위를 받아들일 수 없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사람의 주변에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2. ~ 5. (생략)
(3) 제1항의 범행이 1년을 넘었거나 그 범행으로 인해 제23항의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된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